

대전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2가단14382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C

피 고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문경익, 이경령, 안혜령, 전진주

변 론 종 결 2023. 4. 19.

판 결 선 고 2023. 5.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31,8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20. 4. 3. 접수 제42423호로 마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 4. 2. 접수 제9690호로 마친,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2020. 5. 4. 접수 제405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변경된 청구원인 상 별지 목록 제3~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B의 상속지분인 2/11

지분에 한하여 부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므로, 변경된 청구취지의 '별지 목록 제3~7항 기재 각 부동산'은 '별지 목록 제3~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의 착오 기재로 보아 정정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A의 B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B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2015가소259152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6. 25. 위 법원으로부터 'B은 A에게 19,838,024원 및 그 중 16,798,515원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2015. 6. 6.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A는 B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2015가소39716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0. 14. 위 법원으로부터 'B은 A에게 4,989,757원 및 그 중 3,309,881원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3) E 주식회사가 2013. 1. 22. B에게 대여한 1,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F 유한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순차 양도됨에 따라 B은 원고에게 45,163,401원 및 그 중 12,152,600원에 대하여 2021.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B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당시 재산상태

1) B의 부(父) G이 2020. 2. 10. 사망함에 따라 그 배우자인 피고와 그 자녀들인 H, B, I, J은 공동상속인으로서 2020. 3.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20. 4. 3. 접수 제4242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제3~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 각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B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공동상속인으로서 G으로부터 상속 받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었다.

다. 원고의 소송절차수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2. 8. 13. 대전지방법원 2021하단943호로 B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어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2022. 9. 21. 이 법원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A가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한다는 내용의 소송수계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갑 1~12,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인 대상 행위의 성립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 대상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회사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46519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30427 판결 등 참조).

1) 피보전채권의 존재

A의 B에 대한 제1의 가.항 기재 각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일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인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나) B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법정상속분인 2/11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B이 A에게 위 각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사실상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2/11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A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부인 대상 행위가 되고, B은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 재산이 감소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행위로서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신분상의 행위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재산권의 분배’를 목적으로 한 공동상속인들 간의 일종의 계약인 반면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인적 결단’으로서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불요식행위인 반면 상속포기는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요식행위인 점 등으로 볼 때 양자는 그 요건과 효과, 법적 성질이 전혀 다른 것이어서, 어떤 구체적 사안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실질적으로 상속포기와 같은 결과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민법 제1041조의 상속포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 대상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참조).

2) 피고는 피고 부부가 함께 모은 수익금으로 구입한 아파트를 처분하여 마련한 돈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점(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 피고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지급받은 합의금과 장녀가 적금을 해지하여 지원한 돈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점(별지 목록 3, 4항 기재 각 부동산), 피고 부부가 농사 지은 농작물을 피고가 노점 장사를 하여 마련한 돈으로 취득함 점(별지 목록 5항 기재 부동산), G이 상속받은 부동산이기는 하나 피고가 현상유지에 상당한 노력을 다한 점(별지 목록 6, 7항 기재 각 부동산), B 때문에 다른 자녀들까지 상속분을 포기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수익자의 악의라 함은 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가 드는 위 사정들과 관련이 없고, 피고와 B이 모자관계인 점, B이 2014년에도 회생신청을 하였다가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갑 15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B의 재산상황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드는 위 사정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인권 행사의 효과

1) 관련 법리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참조).

민법상의 사해행위취소권과 달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가액배상을 직접적으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부인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가액배상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50275 판결 참조).

2) 판단

갑 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9. 17. 채권최고액 60,000,000원, 근저당권자 K조합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후인 2020. 8. 6.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피고가 가액배상 하여야 할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7조 제1항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행위는 즉시 소급하여 무효로 되어 채무자의 재산이 원상으로 회복되고 부인소송은 단지 위와 같은 원상회복에 따른 이행을 구하는 것일 뿐인바, 목적물 가액의 산정시점은 부인권 행사의 효력발생일, 즉 부인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부인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2022. 10.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2. 10. 24. 무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의 K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조합은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위 각 부동산의 시가를 229,875,000원(=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 144,300,000원 + 별지 목록 2항 기재 건물 85,575,000원)으로 파악한 사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35,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위 각 부동산의 시가는 229,875,000원 이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각 부동산의 가액 229,875,000원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3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94,875,000원 중 B의 상속지분 가액인 35,431,818원(= $194,875,000\text{원} \times 2/11$, 원 미만 버림)의 한도에서 피보전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피보전채권액이 위 상속지분 가액을 초과하므로 위 상속지분 가액이 가액배상액이 된다)을 가액배상하도록 하고, 별지 목록 3~7항 기재 각 부동산의 경우에는 원물반환을 명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35,431,8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3~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 각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준호

별지

1. 대전 유성구 L 대 555㎡

2. 대전 유성구 L

[도로명주소] 대전 유성구 M

경량철골조 기타지붕 단층 단독주택 1층 64.83㎡

부속건물 시멘트블록조 스테이지붕 단층 창고 30㎡

3. 대전 유성구 N 답 810㎡

4. 대전 유성구 O 답 57㎡

5. 논산시 P 임야 624㎡

6. 전남 Q 답 2242㎡

7. 전남 R 답 1569.2㎡. 끝.

